

토론회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초·중·고 학생인권 및 감독·구제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토론회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초·중·고 학생인권 및
감독·구제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발제

공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하창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토론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최주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이룸센터 교육실 / 온라인 중계

참가신청 <https://bit.ly/3qFKFqN>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목 차

발제1

-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5
공현 (춧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발제2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권고 사례, 과제 14
하창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토론1

- 부산 지역 학생인권 보장 실태와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25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토론2

- 학생인권 증진의 과제 30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사무관)

토론3

- (교육부 토론) 35
최주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첨부 자료

-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안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침해 학칙 관련 민원 자료

시간표

시간	내용	참가자
15:00~15:10	여는 시간	
15:10~15:30	발제 1	공현 춧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5:30~15:50	발제 2	하창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5:50~16:05	토론 1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16:05~16:20	토론 2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사무관
16:20~16:35	토론 3	최주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16:35~16:45	쉬는 시간	
16:45~17:15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	

발제1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공현

춧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의 현실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벌 금지를 선언했다. 2011년에는 광주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 체벌을 부분적으로나마 금지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해온 청소년인권운동이 낳은 유의미한 제도적 개선이었고, 학생인권 현실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불러왔다.

2013년까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2020년 들어 충남과 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상당 범위의 지역이 학생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된 영향은 컸다. 두발복장규제나 체벌 등이 학교의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여지던 상식이 변하기 시작하며 학생인권조례는 사회 인식의 전반적 변화를 견인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 간접적 영향으로 두발복장규제나 자율·보충학습 강제 등의 직접적 학생인권 침해가 줄어든 듯 보인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등장이 곧 학생인권의 전면적, 전국적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실패하였고 주민발안을 통해 발의된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라며 무효화되거나(충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경남)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아직 6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정착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 조례가 기대만큼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맥락도 있다.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악하는 등의 대처로 학생인권조례가 뿌리 내리려던 초기에 발목을 잡았다. 당시 학칙에 용의복장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최근 되돌려졌지만, 학칙을 학교장이 정하게 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지운 법률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록 교육부의 무효 소송은 기각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다’, ‘곧 폐지

될 것이다’, ‘효력이 없다’라는 등의 악선전이 흔했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률	차이
두발 길이나 모양 제한	66.1%	39.6%	26.5%p
면티/양말 색깔 제한	32.2%	17.5%	14.7%p
치마/바지 길이, 폭 제한	68.7%	55.4%	13.3%p
화장/미용제품 제한	71.8%	62.1%	9.7%p
수업외시간 핸드폰 제한	84.0%	74.4%	9.6%p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23.2%	11.5%	11.7%p
직접 체벌	32.4%	23.5%	8.9%p
간접 체벌	40.6%	30.5%	10.1%p
강제성 서약서, 동의서	24.4%	14.7%	9.7%p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년 12월) 내용 중에서 발췌. 전국 중고생 6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5년 전 조사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12월 발표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 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한 분석을 참고할 만하다.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은 26.5%p 차이가 나는 두발자유 보장 여부이다. 복장자유 부분이나 휴대폰, 소지품 검사 등 관련 항목에서도 9-15%p가량의 차이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더 인권 침해 경험 응답률이 낮았다. 체벌에서도 10%p 내외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학생회 활동, 학칙 제개정 시 의견 수렴, 표현의 자유, 차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결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에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신체와 사생활을 억압하는 학교 규칙을 개선하는 효과는 컸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도 두발·복장규제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 및 제한, 체벌 등의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보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공식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 역시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고질적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년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중학생의 21.0%가 ‘간접체벌’이 자주/가끔 발생한다고 답했고, 종교계 학교 고등학생 중 45.1%가 종교시간에 참석을 원치 않아도 대안을 요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19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전국 중고생 2,87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16.5%, ‘교사에 의해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 부담스러운 자세 및 동작을 반복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24.4%로 나타났다. 두발규제는 53.0%, 겹옷이나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는 65.4%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은 두발·복장규제 및 체벌 등의 직접적 학생인권 침해를 빈도를 감소시키고 정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발휘했으나, 학생인권 보장을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서울 지역 학교들 포함 수십 개 학교에 존재하는 속옷, 양말, 가방 색깔 규제, ‘똥머리’ 금지 등의 ‘황당’해 보이는 용의복장규제 내용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규제들(특히 ‘속옷 규제’)을 둔 학교들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하여 개정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학내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이러한 규제들의 폐지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어째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규제들이 가능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며, 과연 서울시의회나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이 학칙을 개정하도록 적극 나섰을지도 물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제는 학생인권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닌가’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앞서 정리했듯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이기도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도 고전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워낙 심각했던 상황에 비하면 학생인권 현실이 나아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괴리가 생긴 원인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정책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문제가 학교 재량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는 법체계, ▲수도권 중심의 언론 보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미제정된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 ▲청소년의 삶의 문제와 학교 현실에 무관심한 사회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21년 11월,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 사안 중 두발 규제, 겹옷 규제, 치마 관련 규제, 속옷 규제,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이 학칙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질의한 항목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복하여 또는 최근에 권고한 사안, ▲교육부 등에서 개선 지도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최근 청소년 참정권 관련 법 개정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을 추려서 정했다. 이는 학생인권 실태를 알아보는 동시에, 교육청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실태를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온 답변들을 보면, 시·도교육청 중 관련 학칙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은 8곳 뿐이었다.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까지 파악, 집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강원, 경남, 인천 교육청을 제외하더라도 6개 교육청은 대표적인 학생인권 사안에 관련해서도 학칙 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자료를 회신하긴 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전 영역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7 (2020 기준)	43	288	중 36 고 24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 제한하는 학칙	4 (2020 기준)	통계 미보유	106	중 5 고 8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0	7	130	중 2 고 10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0	206	미파악	중 27 고 18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0	28 (2021 내 개정 예정)	미파악	중 6 고 8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13	166	82	초 104 중 43 고 25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3 (후반기 삭제 예정)	122	77	초 60 중 41 고 30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3 (후반기 삭제 예정)	130	미파악	
비고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353 (복장 규정도 포함)	55교 중 49교 제.개정 이행	21	52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 제한하는 학칙	129	55교 중 45교 제.개정 이행	6	추후 파악 예정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치마와 바지 선택 규정이 있는 학교는 210	9교 중 9교 제.개정 이행	1	3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자료 부존재	1교 중 1교 제.개정 이행	11	추후 파악 예정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두발규제 관련 집계에 포함됨)	2교 중 2교 제.개정 이행	0	추후 파악 예정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412	72교 중 57교 제.개정 이행	28	68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자료 부존재	43교 중 41교 제.개정 이행	2	17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자료 부존재	13교 중 13교 제개정 이행	4	추후 파악 예정
비고		2020년 국가인권위와 함께 고등학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1년 11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교육청을 제외하고 학칙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수치 등을 회신한 8개 교육청의 답변만 정리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경우에도 학칙 현황을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의구심이 든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적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답했으나, 교육청이 규정을 점검,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안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실제로 학칙 조사 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학교자체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집계 자료 역시 학교 자체 점검 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중고교 700여 곳 중 두발규제가 있는 학교가 43개밖에 안 된다는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기 어렵다(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조사에서도 중고생 중 머리 모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0%에 달한다). 두발복장규제 등에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입장인 학교 측의 자체 점검 결과에 의존해서는 학생인권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교육청들도 학칙을 조사,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과연 실효성 있게 조사, 점검, 감독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대구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별로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개선권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칙 존재 여부를 집계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대구의 수많은 학교들에서 두발규제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발규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듯싶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8년에서 11년의 시간이 지난 지역들에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들이 다수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학칙을 전수조사하고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제·개정 권고를 하며 컨설팅을 지

원한다고 답했으나, 두발규제가 288개 학교,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이 130개 학교라고 응답하였다. 서울 역시 치마 길이 규제나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치활동 금지 학칙 등을 존치시키고 있는 학교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청의 학칙 개정 권고 및 컨설팅이 학생인권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대구 영남고등학교의 사례는 학생인권이 놓인 문제적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대구 영남고의 두발규제와 두발단속에 스트레스를 받은 영남고 재학생들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구교육청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획일적 두발규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두발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영남고는 권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영남고 학생이 교육청에 민원을 낸 것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 이후로 두발규제를 개정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학교에서 논의 과정에 잘 참여해보라는 답변을 했다. 영남고는 인권단체에서 반복적으로 학교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학교장과 면담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언론에 문제가 여러 차례 보도된 이후 최근에는 두발규제에서 길이 규제를 없애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교육청들은 걸은 학생인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감독하거나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서 개선 권고를 받더라도 학교에서는 이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학생인권법은 ‘선’을 긋는 것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에서의 자의적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개정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조항을 마련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제정을 촉진시키고, 이미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 두발복장규제, 체벌, 종교강요, 보충·자율학습 강요, 성희롱·성추행 등 대표적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명시

▲ 학생 징계 사유를 지금보다 더 한정하고, 징계 시 재심 청구권 등 보장

▲ 학생자치활동 보장,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 학칙 제·개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 보장

▲ 학생인권 실태조사 등 교육청의 의무를 명시하고, 각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옹호관을 뒀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법률 개정안 참고)

이러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학교가 넘어선 안 될 선은 어디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제 절차와 교육청의 책무가 있는지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학칙은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문제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인권 침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관해 수십 년째 비슷한 권고를 반복하고 있어도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도 부지기수다. 아예 학생인권에 관해 제대로 ‘선’조차 그어져 있지 않고 어떤 것이 ‘선’을 넘은 것인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는 개별 학교나 교사의 사소한,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다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이고 악습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학교들을 일일이 이슈화하고 감사 등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체벌 등의 학생인권 문제에서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인권이 보장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인권법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인권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가 되었든, 시행령 개정의 형태가 되었든 학생인권 문제를 개별 학교 또는 개별 지자체-교육청에 맡겨놓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권고한 학생인권 문제들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

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칙을 전수 조사,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체벌 등 직접적 학생인권 침해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히고 대안적 교육 방식을 적극 보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지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관련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행할 때이다.

발제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권고 사례, 과제**

하창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동반자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1

인권보호를 위한 동반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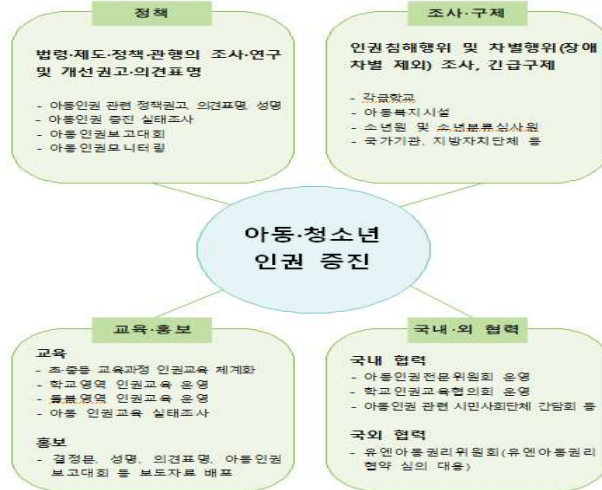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권보호 역할



3

판단기준 1. 아동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공공기관(학교 포함)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관련 판단 시 적극 반영**

4

판단기준 2. 비차별원칙

-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UN지침**
: **리아드 가이드라인(The Riyadh Guidelines, 1990)**

- 성인이 했을 경우
범죄로 인식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면,
청소년이 해도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청소년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피해를 입거나**
범죄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5

판단기준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조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해야 함
- **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정성)**
기본권 제한 수단(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 조치는 보다 완화된 방법을 모색하여 그 제한을 필요한 최소의 것이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거나, 양자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6

학생인권의 주요 요소

- 인격권, 행복추구권
- 자유로운 개성 실현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자기결정권
- 통신의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신체의 자유 등



7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1)

: 불편한 시선

- ○린이, ○민이 ……
- 어디서 어른에게 ……
- 나이도 어린 놈이 ……
- 학생이 감히 ……
- 미성숙한 존재 ……



8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2)

: 부당한 대응(??)

- 대견하다 ……
- 기특하다 ……
- 장하다 ……
- 보호의 대상 ……



9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1)

- **자기결정권** : 헌법 제10조에 의해 파생되는 권리로 타인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교
- 두발 길이, 모양
- 여학생 묶음머리 모양
- 신발 색상 및 굽 높이
- 악세서리, 화장품 소지



10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2)

- 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
“흰색 속옷만” “포니테일 금지”...진정 당한 학교 복장 규제
- 서울시 관내 여자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
속옷 관련 규정 존재(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실)
- 내용 : 속옷 착용 유무, 색상, 무늬, 비침 정도



11

인권친화적 학생 복장 관련 규정 마련 필요(자기결정권)

- 교칙에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복 셔츠,
넥타이 위에 조끼, 카디건, 재킷 중 하나를 입
으면 그 위에 사복 외투를 입을 수 있다”고 안내
- 학생자치회장과 임원들이 체육복 등교 허용을
건의했으나, 학교측이 수용하지 않았음

☞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



12

자기결정권

의무적 자율학습 운영은 인권침해

- 학생들의 학습역량 제고
- 다수 학생 관리 차원에서 의무 자율학습 시행
 - ☞ 자율학습의 취지에 맞도록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관행 개선 권고

초등학교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

-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 보호장구 착용이나 안전 교육 미이행 사례
 -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 및 예방 교육 노력 필요
- 일률적 자전거 통학 금지가 아니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대상 및 안전대책 마련 권고

고등학교 학생 등교 시 오토바이 이용 금지(??)

14세 미만 아파트 헬스장 출입 배제(??)



13

통신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 학내 휴대전화 사용 일괄 규제

- 학습권 보장,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예방 등
- 아침에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
- 어느 학교 기숙사는 월요일 수거, 금요일 반환

- ☞ **학생의 통신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필요**



14

학생 임원 자격 및 선거 개입 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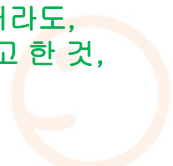
-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함
 - ☞ 비위행위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 하여 학생회 규정 필요
- 학생회 임원 선거 출마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한 사전 검열 및 수정 제안
 - ☞ 임원선거 출마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권 및 학생 자치의 보장 차원에서 학교의 개입 최소화 필요



15

교사의 지도방식에 따른 인격권 침해

-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중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에게 거울을 보고 반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부모에게 전화해서 알려 주겠다고 말하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음.
- 관련 규정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방해 금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학교의 책무)
 - 아동권리협약 제19조(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거울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한 것, 책상을 한 차례 친 행위 등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16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2006년)
(신체적 처벌 및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물리적 처벌과 비물리적 형태의 처벌(경시, 모욕, 책임전가, 위협 등)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됨을 지적하여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처벌 금지

☞ 학교규정에 직접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언어폭력 금지 명시 필요



17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18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토론1

부산 지역 학생인권 보장 실태와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부산 지역 학생인권 침해 실태와 부산시교육청의 태도를 바탕으로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1.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의 실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은 2021년도 1학기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아 왔다. 그 결과 10월 11일 기준, 총 27개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총 75건의 학생인권 침해 제보가 접수되었다. 주요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제보 사례를 보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한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여전하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비롯한 학생 당사자들이 요구했던 두발 복장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운영에 관여할 권리 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산시교육청

부산 동래구 A 고등학교의 제보자(남학생)에 따르면, 해당 학교 생활 지도 담당 교사는 머리를 기르고 있는 자신에게 성별이분법적인 편견을 내세워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했다. 이에 분노한 해당 학생은 부산시교육청에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머리 길이에 관한 규제는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생생활규

가. 자유권		
1) 물품 소지 관련	2) 두발 관련	3) 기타 규제
-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 사용 및 소지 금지(수업 시간 외) -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	- 염색 및 펌 금지 - 머리 길이 규제(귀 밑 30cm) - 머리 길이를 측정함 - 무조건 머리를 묶어야 함(여학생) - 숏컷(투블럭), 똥머리, 고데기 금지(여학생) - 집게핀 사용 금지	- 액세서리 착용 금지 - 귀걸이는 투명 귀걸이만 허용 - 가방 색깔, 종류 규제(검정색 백팩만 가능) - 손톱 길이 검사
3) 복장 관련 규제		
- 체육 시간 외 체육복 착용 금지 - 학교에서 허용했을 때만 외투 착용 가능 - 외투를 동복 자켓 위에 입어야 함 - 학교 반경 50m 내에서 학생증 착용 강제 - 교복 치마 길이 규제(무릎 위 5cm를 넘기면 안됨)	- 하복 소매 밖으로 사복이 튀어나오면 안됨 -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됨 - 학교 공지 이전에 동복, 춘추복, 하복 착용 금지 - 스타킹 색깔 규제 (검은색만 가능) - 롱패딩 길이 규제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 지양)	
나. 평등권		
- 여학생 교복 바지의 질이 남학생 바지보다 떨어짐 (색이 다르고 소재가 훨씬 거침) - 여학생에게만 무용수업을 듣게 함 - 성적에 따른 대외 활동 안내, 학교 내 시설(기숙사, 정독실) 이용에 차별이 있음		
나. 참정권		다. 사회권
- 학생 생활 지도 관련 공청회에서 두발과 복장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도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 성적, 징계 등의 이유로 학생회 임원이 되지 못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교칙을 정할때 교사의 개입이 많음 (크로스백을 금지하고 백팩만 허용하는 교칙이 생김) -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음. - 교내모임, 동아리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		- 정규 수업 시간 외 강제 학습을 강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줌 - 실내화를 들고 다닐 것을 강요/안들고 온 날은 맨발로 생활해야 함 - 담요를 두르고 교실 밖을 나갈 수 없음 - 교사 지시 불이행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징계받을 수 있음 - 수행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경우 보충수업 15시간 강제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27건)를 기본권 영역별로 분류한 표.

규정은 학교장이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며 학교장에게 건의하라는 답변을 했다. 실제 해당 학교 학생 생활 규정에는 머리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는 해당 학생에게 단 한번도 연락하여 상황에 대해 묻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 학생인권 침해 권리구제를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규칙 제개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교육청이 관리할 권한이 없음 ▲ 부산지역에는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금지하는 법적 근거의 부재 등으로 인

한 것이다.

1) 첫 번째,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권리구제를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두고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센터 등 전담기구를 두어 학생인권 침해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이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거나, 부산교육콜센터에 전화하여 접수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인권상담을 통한 학생인권 침해 사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 접수 학생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권리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의 방식으로, 민원법에서 정한 민원 답변 기한에 맞추어 응답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전부가 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없어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불분명하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1)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2) 학생인권 보호 교육 (3) 학생인권 권리구제(민원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다.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처는 학교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학생인권 보호 교육과 학생인권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팀이다.

2)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규칙 개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 규정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동절기 과도한 학생 복장 지도 자제 협조’(학교생활교육과) 공문을 통해 겉옷 규제를 자제할 것을 관내 학교들에 요청했다. 이처럼 규정을 개정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금지하는 차선책도 존재한다. 하지만 겉옷 규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생활 규제가 아닌 두발 복장 규제, 휴대전화 일괄 수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선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를 핑계로 어떠한 실효성있는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 규칙에 관한 제정 또는 개정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의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어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최소한의 법률조차 학생인권조례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학교 생활 교육 기본 계획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 여부가 좌우된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규정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침해로 규정되어, 교육청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가 부산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1)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2)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3. 학생인권법이 필요했던 순간들

- 무책임한 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에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2021년도 학생의날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교장 권한을 핑계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고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를 예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 배치의 문제라며 전담기구 설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학생인권 보장 지침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부산시교육청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휴대전화 일괄수거, 두발 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 통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변함없는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개월 가까이 매주 1인 시위, 선전전, 기자회견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입장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

이 11월 3일 학생의날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부산시교육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권고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다가, 청소년인권운동 단체가 요구하고 나서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한편, 학생인권 보장 지침 시행은 학교장의 권한에 저촉된다고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순간에 학생인권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학생 생활 규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산시교육청에 있고,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분명한 금지 조항이 있는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적어도 학교장 권한을 핑계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핑계로 학생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에게 학교장에게 건의하라는 답변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권리를 담은 법률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 보장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토론2

학생인권 증진의 과제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사무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증진의 과제

학생인권담당 이창휘 사무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을 둔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사안 구제 절차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 절차 흐름



2

학생인권침해 사안 구제 시 권고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 및 권고

1.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요청을 이유로 신청인을 찾는 행위 금지
2. 인권침해 행위 중지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분리 조치
3. 인권침해 사안이 관련법(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의무 사항 이행 안내
4. 인권침해 사안 조사에 따른 권고
 - 인권침해 행위 재발 방지 및 인권교육 수강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의 계획 제출
 -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구제활동 신청인의 요청사항

1. 피신청교의 학생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분리조치, 전보발령, 감사 등을 요구
2.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신청인의 의사 전달
3. 피신청인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 방지 및 인권교육 수강
4.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3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방향

학생의 자기 결정권 존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존중 및 반영

- 학교생활인권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적극 반영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생의 책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자세 함양

- 역지사지의 정신, 칸트의 정언명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조(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인권 정책의 한계

강제와 자율 사이에서

-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나 스스로 인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함
- 동의없는 강제적인 제도 보다는 토론과 토의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제한은 최소화하여야 함
- 경미한 제한의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를 하기 보다는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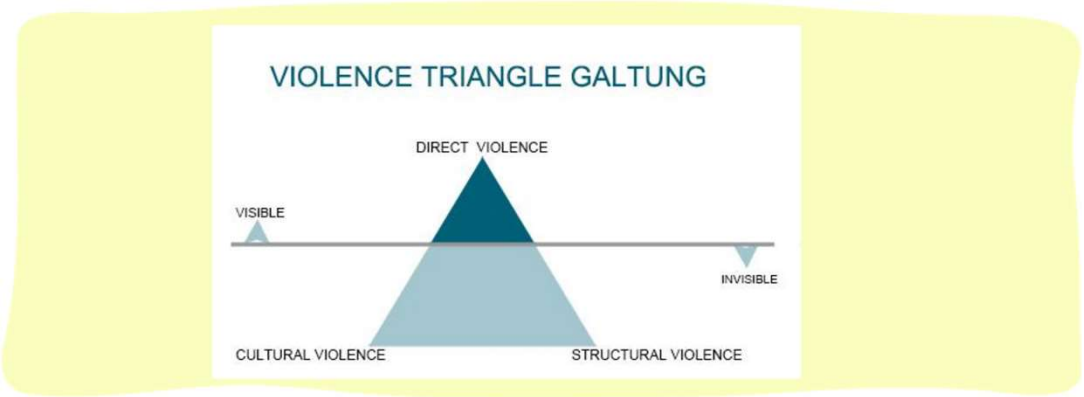
5

학생인권 정책의 한계와 과제

실효성이 있는 정책 마련

- 실질적인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학생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규칙(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가 헌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침익적 규정을 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내
-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학교규칙(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보급
-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특히,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6



토론3

교육부 토론문

최주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7
----------	-------

발의연월일 : 2021. 11. 3.

발 의 자 : 박주민·김정호·한준호

강민정·홍정민·류호정

진성준·최혜영·이용우

윤영덕·강득구·장경태

김승원·송옥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상위법 위반 시비에 휘말려 왔음.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에 의해 지역 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학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

- 도·감독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나.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다.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라. 학교에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도록 하고,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 마.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 바.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령의”를 “법령 및 조례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의 제·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학칙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⑤ 학칙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생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 압수하는 행위.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의3(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4(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학생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2.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선출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6.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그 소속 학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제18조의2제1항 중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를 “징계처분에”, “퇴학 조치를”를 “징계처분을”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실시
2.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5. 학생인권정책 심의를 위한 민관합동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운영) 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의7(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치)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끝에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에도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될 염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해자,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의 중지
2.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제2항 중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수신	17개 시도교육감
	참조	각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및 민주시민 교육과
	문의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0-6214-3550
	발송일	2021. 10. 28. (목)
	제목	각 시도 교육청 학생인권 침해 학칙 조사 결과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청의 관할 단위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두발 제한을 규정한 학칙과(국가인권위원회 2019.11.25. 결정 19진정0468300, 국가인권위원회 2019.4.29. 결정 18진정 0157700·18진정0531600(병합) 등)과 ▲외투 착용 제한(국가인권위원회 2020.6.30. 결정 19진정0891200),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국가인권위원회 2017.9.8. 결정 17진정0193700 등), ▲학생의 정치 활동 제한(국가인권위원회 2020.6.30. 결정 19진정0883300)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로 보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학칙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안,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 등

이 학생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2017.12.21.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회신양식.

붙임 2. 학생 인권 침해 학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

붙임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자료. 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벌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 발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 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p>		
2 복 장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 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p> <p>“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 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p>		

	<p>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p> <p>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p>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p>“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p> <p>“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한다.”</p>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p>“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속치마 미착용</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점</td> </tr>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r> </table>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						

지 품	록 하는 학칙	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정 치 활 동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별첨 2.] 학생 인권 침해 학칙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 상세

1. 두발 - 두발 길이 및 모양, 색 제한

■ 참고자료 1의 1 국가인권위원회 2019. 11. 25. 결정 19진정0468300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p>학칙</p>	<p>나.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생활규정」 제24조는 “<u>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앞 머리카락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에 닿지 않고, 옆 머리카락은 귀를 가리지 않으며, 뒷 머리카락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염색, 파마, 스프레이, 왁스, 투블럭컷 등으로 머리 모양을 변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u> 이를 위반하여 교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는 학생은 학생 안전부에서 별점과 함께 별도의 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결정</p>	<p>국가인권위원회 2019. 11. 25. 결정 19진정0468300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두발을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하고, 앞 머리카락은 눈썹에 닿지 않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 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p>

■ 참고자료 1의 2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결정 19진정083570 등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학칙	다. 2019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두발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르면, 두발은 학생다운 단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앞머리는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형머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9조에는 두발 점검 등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를 4차시에 걸쳐 불응을 할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54조(제한)에 의해 포상에서 제외된다.
결정	<p>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결정 19진정083570 등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p> <p>“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두발을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와이셔츠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 형태를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p> <p>설사, 학생의 두발을 스포츠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의 단정함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투블럭컷이나 상고머리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4차시에 걸쳐 불응을 할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p>

두발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일자		두발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주문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결정	0000고등학교장 및 00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00중학교장에게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p>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p> <p>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p> <p>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p>

		<p>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p> <p>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p>
3	국가인권위원회 2009.12.28.결정 09진인4912 등 병합	000중학교장에게 학생두발 단속 시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4	국가인권위원회 2018.7.3.결정 17진정1072800	00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및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5	국가인권위원회 2019.4.29.결정 18진정0157700·18진정0531600(병합)	<p>1. 0000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두발상태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p> <p>2.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염색과 파마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p>
6	국가인권위원회 2019.11.25.결정 19진정0468300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p> <p>2.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p>

		부산교육감
		주 문
7	국가인권위원회 2020.4.7.결정 19진정0899700	<p>1. ♀♀♀♀고등학교장에게, 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합니다.</p> <p>2.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상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p> <p>부산교육감</p>
8	국가인권위원회 2020.6.30.결정 19진정0835700 등 병합	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
9	국가인권위원회 2020.12.21.결정 20진정0268400	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을 재개정하기를 권고


2. 복장

■ 참고자료 2의 1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결정 19진정0891200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학칙	「학생생활규정」 제13조 제1항은 “교복(생활복)·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등·하교 때 건강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복 윗도리 대신 다른 의복 착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결정	<p>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결정 19진정0891200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p> <p>“한편 피진정학교가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p> <p>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교실별로 난방온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학생 개인에 따라 춥거나 덥다고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고, 감기 등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감기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등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p> <p>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p> <p>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실험이나 실습시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수업시간에 한하여 외투 착용을 제한하여도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투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은 수업시간, 쉬는 시간 화장실을 가거나 교실을 이동하기 위하여 복도에 나가는 경우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p> <p>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강조하고 이에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양자 간의 법익균형성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p> <p>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학교에서 복장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통하여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있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p>
----	--

■ 참고자료 2의 2 2016 교육부 공문



대한민국 행복 열쇠, 교육개혁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규칙(겉옷규제)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나. 겉옷과 외투규제에 대한 학칙 시정 촉구 민원(국민신문고, '15. 12. 23.)
2. 학생 두발·복장·용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3.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규칙에 대해 학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시정 및 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4. 이에 불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규칙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학교규칙 시정촉구 민원 1부. 끝.

교육부 장관인



수신자 강원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참고자료 2의 3 2020. 10. 30. 언론보도 기사

<p>학칙</p>	<p>제13조 (용의복장)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며, 건전한 학풍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복장과 용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정한다.</p> <p>1. (교복 착용)</p> <p>① 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어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우천 시 체육복 착용이 가능하다.</p> <p>② 교복 치마 길이는 무릎 위 약10cm가량 허용한다.</p> <p>③ <u>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u></p> <p>부산 A여고 학생생활규정 ©학교알리미</p>
<p>교육부</p>	<p>여학생은 무조건 교복 치마? 교육부 "교복 구매 시 바지 선택권 부여"</p> <p>학교 주관 교복 구매 불합리성 해소 "블라우스 등 과도한 비용 책정 금지"</p> <p>고민서 기자 입력 : 2020.10.30 10:34:36</p> <hr/> <p>중·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복 구매 과정에서 치마 외에 바지를 기본 하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는 일선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p> <p>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p> <p><u>그 결과 교육부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u> 이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복 구매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p>

■ 참고자료 2의 4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학칙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92면				
	<표 2-20-1>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Total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chi^2=2.49$	중학생	1187 (45.4%)	1427 (54.6%)	2614 (100.0%)
		고등학생	1653 (47.4%)	1831 (52.6%)	3484 (100.0%)
		Total	2840 (46.6%)	3258 (53.4%)	6098 (100.0%)
	②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chi^2=10.52^{**}$	중학생	1048 (40.1%)	1568 (59.9%)	2616 (100.0%)
		고등학생	1254 (36.0%)	2230 (64.0%)	3484 (100.0%)
		Total	2302 (37.7%)	3798 (62.3%)	6100 (100.0%)
	③면티/양말 색깔 제한 $\chi^2=1.38$	중학생	1938 (74.1%)	678 (25.9%)	2616 (100.0%)
		고등학생	2627 (75.4%)	857 (24.6%)	3484 (100.0%)
		Total	4565 (74.8%)	1535 (25.2%)	6100 (100.0%)
	④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chi^2=122.25^{***}$	중학생	778 (29.7%)	1838 (70.3%)	2616 (100.0%)
고등학생		1519 (43.6%)	1965 (56.4%)	3484 (100.0%)	
Total		2297 (37.7%)	3803 (62.3%)	6100 (100.0%)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따라서 학칙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안,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성적, 징계,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 등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안 등이 학생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3. 소지품 -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

■ 참고자료 3 국가인권위원회 2017.9.8. 결정 17진정0193700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학칙	정보통신규정 제3조 “휴대폰은 조례시간에 보관함에 담아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종례시간에 돌려받는다”
결정	<p>“피진정학교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현재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방화중학교와 한울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벌점이나 압수와 같은 제재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p> <p>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p> <p>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p>

	휴대전화 소지 금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일자	휴대전화 소지 금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주문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2010.10.29.결정 10진정0298600	0000고등학교장에게 학칙 개정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 2014.11.25.결정 14진정0356600	000기계공업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3	국가인권위원회 2016.5.16.결정 15진정0477700	A중학교장에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

		화기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4	국가인권위원회 2016.5.16.결정 15진정1052200·16진정0194200 (병합)	C고등학교장에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기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5	국가인권위원회 2017.9.8.결정 17진정0193700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일과 시간동안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p> <p>2. 경기도교육감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p>
6	국가인권위원회 2017.12.28.결정 17진정1030700·17진정1030800	0000고등학교장에게 학교학생생활규정의 관련 규정을 개정 권고
7	국가인권위원회 2017.12.28.결정 17진정0589600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 일과시간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학생생활인권규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p> <p>2.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및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p> <p style="color: red;">대구광역시교육감</p>
8	국가인권위원회 2018.8.9.결정 17진정0447800	광주광역시교육감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 일과 시간 동안에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학생생활규칙」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p> <p>2. ○○광역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 개정 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p>
<p>9 국가인권위원회 2018.10.22.결정 18진정0547300</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남도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p> <p>2.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p> <p>경상남도교육감</p>
<p>10 국가인권위원회 2018.10.22.결정 18진정0190900</p>	<p>0000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학생생활규정, 00누리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p>
<p>11 국가인권위원회 2018.11.19.결정 18진정0239300</p>	<p>대구교육감</p>

		주 문
		<p>1.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일과 시간동안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독서실·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p> <p>2.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p>
12	국가인권위원회 2019.2.26.결정 18진정0769500	000고등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3	국가인권위원회 2019.4.29.결정 18진정0157700·18진정0531600(병합)	000중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4	국가인권위원회 2019.12.23.결정 19진정0615400	000고등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주 문
15	국가인권위원회 2020.4.7.결정 19진정0899700	<p>1. ♣♣♣♣고등학교장에게, 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합니다.</p> <p>2.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상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p> <p>부산교육감</p>

16 국가인권위원회 2020.9.22.결정 20진정0041600	0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
-------------------------------------	--

4. 정치활동

■ 참고자료 4의 1 2020. 3. 6. 언론보도 기사

학칙	<p>고등학교 학칙 중 학생 정치활동 제한 조항 분석 *서울 고등학교 전체 320곳 중 비공개 49곳을 제외한 271곳</p> <p>■ 있다 ■ 없다</p> <p>1. 전체 학칙 정치활동 금지 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학칙</p> <table border="1"> <tr> <td>225곳(83%)</td> <td>46곳(17%)</td> </tr> </table>	225곳(83%)	46곳(17%)
225곳(83%)	46곳(17%)		
교육부	<p>[제1303호]학칙은 여전히 정치활동 땀 ‘퇴학’ : 표지이야기일반 : 표지이야기 : 뉴스 : 한겨레21 (hani.co.kr)</p> <p>전남·울산교육청, 일선 학교에 ‘정치활동’ 조항 삭제 요구</p> <p>조례가 아닌 법이 바뀐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당장 고3 교실의 몇몇은 4월15일 투표권을 행사한다. 누구도 이들의 법적 권리를 막을 순 없다. 하지만 18살 선거권 부여가 학생의 정치활동 확대가 아닌 투표 당일 투표권 행사에 간헐 수 있다. 학칙이 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교육부는 1월 초 17개 시도와 협의했고, 2월 중순 학칙 전면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각 시도에서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교육청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3월 초 현재까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움직인 것은 전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정도다.</p> <p>전남도교육청은 2월20일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반영, 정치활동(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 등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울산시교육청도 각 학교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물</p>		

론 전남과 울산 지역의 현장 학교 분위기는 제각각이다. 교육청의 지침에도 전남도 내 한 공립고등학교의 학칙을 보면, 3월5일 현재 집회 참가시 징계 규정과 학생자치회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이 그대로 있다.

■ 참고자료 4의 2 전남교육청 공문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내일을 바꾸는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

다. 학교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반영
- 정치활동(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

※ 학생 유권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징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참고자료 4의 3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결정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학칙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결정	<p>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결정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p> <p>“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에 앞서 학교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규정」 등 학교규칙에 근거도 없다.</p> <p>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경 미화에도 좋지 않으며,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적, 종교적 활동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어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 내 게시물의 게시, 단체 조직 등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후 통제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p> <p>한편 게시물의 내용이나 단체의 활동내용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어야 한다.</p> <p>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종교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 또는 정치, 종교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조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p> <p>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게시물 게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도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p>

〈별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자료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물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물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
 촛불청소년인권법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연대 조직 현황

1) 참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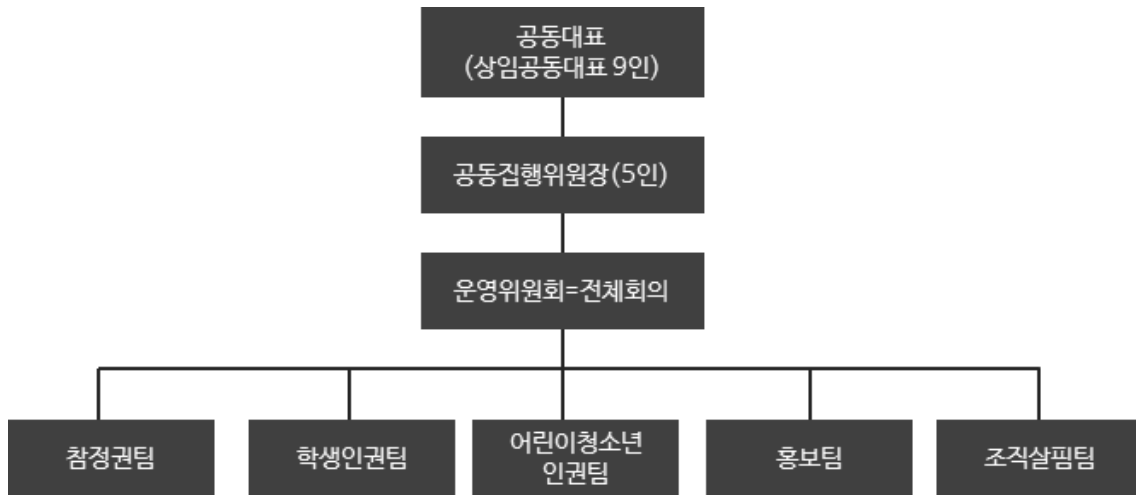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21.09.20 현재 371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교교수노동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보호회)/ **교육공공성 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 **녹색당** 서울시당/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동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문화행동** 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라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흥성지

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전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사초롱-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도포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주권회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튜립연대(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하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향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흥천골프장대책위, 흥천군농민회, 흥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흥천군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운세미학교, 우다대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노동당전남도당/ 녹색당전남도당/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중고등학생회연합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중당전남도당/ 어린이도서연구회전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순천지회/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무지개학부모네트워크/ 전남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지역아동센터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은갓문제연구소/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숨/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중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흥성YMCA)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팽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전남, 제주, 충북

2) 조직체계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곽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민변/법무법인 지향),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레빗(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서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이운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일음(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전희영(전교조 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 김부정(참교육학부모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민선(전교조),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단 다섯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만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22년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예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279
신청일	2021-10-29 15:20:48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p>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2640
접수일	2021-10-29 16:18:55

담당자(연락처)
처리에정일

황재식(033-258-5523)
2021-11-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15:09: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1AA-2110-125127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의 실태”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9조 ④와 교육부의 개정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제·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나. 또한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권고 사항을 안내(2020. 12. 9)

하였으며, 2021 학교생활규정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 전체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학교생활규정 점검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중(2021. 11. 30.까지)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황재식에게 연락(☎033-258-5523, roalman@korea.kr)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학교규칙 (학교생활규정관련)개정 현황.hwp

인쇄

강원도내 초·중·고 학칙(학교생활규정)개정 진행 상황

□ 학칙(학교생활규정)개정 진행 현황

연번	세부내용	기간
1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사항 및 학칙개정 절차 안내	2020. 12. 9.
2	학교생활규정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수 조사 (초 349, 중163, 고 116, 특 8)	2021. 1.~ 3. 31.
3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업무지원 계획 수립 및 영상 제작	2021. 4. 26.~ 5. 3.
4	학교생활규정 점검 계획 수립	2021. 6. 15.
5	학교생활규정 도교육청 점검단 구성 및 협의회 개최 - 도교육청 점검단 : 초·중·고 교원 및 업무담당자 12명 - 단위학교 적용 사항 점검 협의	2021. 6. 30.
6	학교생활규정 교육지원청 점검단 구성 교육지원청별 점검단: 초·중등 교원 및 업무담당자 3명(총 51명)	2021. 7. 7.
7	인권침해 사항 수정을 위한 학교생활규정 점검 자료 제작	2021. 7. 15.
8	학교생활규정 점검을 위한 전체 점검단 연수 및 협의회 개최 - 학교생활규정 점검 목적 및 방법 안내 - 학교생활규정 지역별 자료 점검 실습 및 피드백	2021. 7. 16.
9	단위학교 학교생활규정 점검 완료 및 결과 안내 - 1차 교육지원청 점검(2021. 8. 30.완료) - 2차 도교육청 점검(2021. 9. 30.완료) - 단위학교별 학교생활규정의 수정 및 삭제 사항을 표시하여 점검단의 의견을 침삭하여 학교별 결과 안내	2021. 7. 16~ 2021. 9. 30. 2021.9.15.부터 순차 안내
10	단위학교별 점검받은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확인 후 개정 진행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④항) - 개정 할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제①호)	2021.11.31.까지
11	개정된 학교생활규정 추가 점검 및 컨설팅	2021. 12. 31.
12	매년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	2022. 1.~

□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검토 결과 안내 예시

구분	학교생활규정 항목
<p>00학교 학교생활규정 원안</p> <p>제14조 (두발, 복장 등 용모)</p>	<p>1. 복장</p> <p>(1)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하되, 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며 위생적으로 세탁하여 항상 청결히 하고 단정하게 한다. (단, 교복은 교복규정에 의거하여 단정하게 착용한다)</p> <p>(2) 착용 시기는 학교장이 조절한다.</p> <p>3. 신발 : 신발은 학생용 단화 및 운동화를 신되 하이힐, 부츠, 샌들 또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등하교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p> <p>4. 두발 : 두발은 길이를 제한하지 않으나 염색, 파마, 탈색은 규제한다.</p> <p>6. 소지품 : 학생 생활에 어울리고 필수적인 물품만 소지하고 다음은 규제한다.</p> <p>(1) 고가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2) 피어싱, 흉기, 담배,ライター 등</p> <p>(3) 휴대전화는 등교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 후 하교 시 받는다. (단, 필요시 담임교사 허락 후 사용가능)</p> <p>(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관리에 맡긴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다.)</p> <p>7.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정도 이외의 화려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색조 화장은 금한다</p>
<p>검토 의견</p>	<p>수정 및 삭제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장, 신발, 두발, 화장 제한 규정의 경우 학생표현의 자유와 자율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함. · 소지품 검사의 경우 학생의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학생의 자율권을 고려한 규정 제시가 필요함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한다는 내용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수정한다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함.

□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사항 및 학칙개정 절차 안내(2020. 12. 9.)

- 학칙 개정 절차 순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0. 8. 15.] [대통령령 제30829호, 2020. 7. 14., 일부개정]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규정(신체, 표현의 자유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내용

- 학교생활규정 반인권적인 사례 및 예시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
- 교복 및 복장(체육복)의 인권 침해 사례 삭제 및 보완
- 화장과 용모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
- 명찰 착용 강제 사항 및 강압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 금지
-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지 제한 사례
- 학생자치활동 독립성 보장
- 성차별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 학교생활규정(신체,표현의 자유)에 관한 안내

학교생활규정 안의 신체, 표현의 자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안내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Ⅰ. 학교생활규정 반인권적인 사례 및 예시안

1. 학교생활규정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 보완

생활규정 제정의 기본목적은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바, 학교생활규정 앞부분에 제정 목적 조항을 두어 학생인권 보장의 기본원칙 선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예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00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근거】이 규정은「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정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원칙】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제4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며, 임신, 임신중단, 출산, 이성교제 등의 사유로 자퇴권고, 전학, 퇴학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불명확 조항의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 징계 규정의 불명확 조항 :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성행이 불량한 학생,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예시안>

제00조(선도사항)

- ① 학생 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규정에 위반되어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신체·정신·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행위.

3.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학교생활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학교장 허가사항으로 제한하거나 학교 밖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규정에 ‘사상 불온’, ‘이적행위’ 등의 표현 사용)
- [사례]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표현물의 배포행위 등은 금지한다.
- [사례] 학생이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례] 단체행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불법집회 또는 불량 씨클을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한 학생
- [사례]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선거권이 만 18세부터 허용되었으나 이와 맞지 않는 규정)

<예시안>

제00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4. 교복 및 복장 (체육복) 의 인권침해 사례 삭제 및 보완

- 특별한 이유 없이 외투나 교복·체육복·사복의 혼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
(예: 겨울에 추워서 교복 치마 아래 체육복 입는 것을 금지하거나, 겨울용 외투 안에 반드시 교복 마이를 입도록 하는 경우)
- 동절기에 모든 교복을 입은 뒤에 겹옷을 걸칠 수 있게 하는 규정(동절기 교복인 교복 정장이나 야구점퍼 등을 입은 뒤에 패딩이나 덧옷을 입게 하는 규정)
- [사례]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인정 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사례
- [사례]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치마를 기본으로 하고 바지는 따로 구매하도록 한 사례
- [사례] 여학생 교복에 대해 여성적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 : '여학생 교복의' 기본형 자체가 '남학생 교복에 비해' 허리라인을 강조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짧은 상의 길이, 팔 둘레와 가슴둘레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
- [사례] 치마길이는 무릎 뒤쪽을 기준으로 10cm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사례] 교복 안의 티셔츠, 양말, 신발, 외투 등의 색이나 모양을 ('과도하게'라는 표현 삭제) 제한하는 사례
- [사례] 높은 구두와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 샌들, 물은 금지한다.
- [사례] 교복선정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 하는 경우

<예시안>

제OO조(교복 및 복장 등)

- ①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방법,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교복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후드티·티셔츠·원피스·반바지 등)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할 수 있으며, 치마와 바지의 착용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교구성원의 협의에 의하여 교복, 체육복, 사복 등을 혼용할 수 있다.
- ⑤ 교복의 치수를 필요에 따라 개인이 변형할 수 있다.

5.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 두발의 길이, 형태, 모양을 제한하는 사례
(‘과도하게’ : 주관적 표현이므로 삭제)
- 성별에 따라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 정도를 달리 규정하는 사례
- [사례] 탈색은 금지하며 짙은 갈색으로 염색은 허용한다, 파마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파마만 허용한다.

<예시안>

제OO조 (두발)

- ① 학생의 두발의 형태와 모양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6. 화장과 용모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 학생의 화장 등 용모에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는 경우
- 화장이나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피어싱 등)에 관하여 일방적인 금지를 규정한 사례
- [사례] 기초화장(BB크림, 립밤, 립글로스)은 허용한다. 지나친 색조화장(틴트, 매니큐어, 마스크라, 아이라인, 섀도우, 블러셔)은 금지한다.
- [사례] 귀걸이는 한 쪽 귀에 부착형으로 2개까지 허용한다.

- [사례]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반지, 팔찌, 목걸이, 피어싱은 금지한다.

<예시안>

제00조(화장 및 용모)

- 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외모로 평가받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통하여 허용범위를 정한다.

7. 명찰착용

- 고정형 명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 교복 자켓 외 생활복 등에 고정형 명찰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
-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은 탈부착형이나 호주머니형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명찰 패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12.21.)

<예시안>

제00조(명찰)

- ① 교복의 교표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 ② 교복 외에 생활복에도 호주머니형이나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 ③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통하여 명찰착용을 폐지할 수 있다.

8. 소지품 검사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일괄적, 강압적 소지품 검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2017.12.21.)
- 소지품 검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사례
- 학교장이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
- 교사 외의 자(학생)가 소지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사례] 흡연이 현장에서 목격되었을 때는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예시안>

제OO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③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9.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 하거나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사실상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
- [사례]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사례]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놓는다.
- [사례] 교사는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방과 후에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예시안>

제OO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②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 ③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10. 학생자치활동

-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보장 미흡
-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을 통제하게 하는 ‘선도부’를 운영하는 경우
- 학생자치회 선거 과정에 학교가 개입하는 사례
-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 [사례]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사례]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사례] 선거관리위원장이 교장이나 학생부장인 사례
- [사례]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자격 제한 규정을 두는 사례(성적, 출석, 징계 등)
- [사례]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에게 교사 추천서나 서약서(각서)를 요구하는 사례

☞ 전교조강원지부-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제61조

② 도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 대표가 선출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성적, 교사 추천 등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예시안>

제00조(자치활동)

①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교칙, 생활 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안건 포함)를 사전에 알리고, 학생자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한다.

⑥ 학생자치활동(학생단체, 동아리)은 학교장이 보장한다.

⑦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⑧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학생자치회 규정 제·개정은 학생자치회 권한으로 보장한다.

- 학생자치회 예산도 학부모회처럼 전체 학교운영비 중 일정 비율 편성 보장 필요

11. 성차별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 학교 내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학생의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할 때 성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종목을 제한하는

경우.

- 젠더폭력의 피·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학교에서부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며,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삭제해야함.
- [사례]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 [사례]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사례]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예시안>

제13조(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

- ① 학생이 학교의 성차별적 문화를 발견했을 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학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② 신체접촉, 성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허용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여러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서로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행위를 멈춘다.
- ④ 성폭력에 의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성 고충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⑥ [항 분리]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물을 노출 및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458
신청일	2021-10-29 15:22:40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p>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0135

접수일
담당자(연락처)
처리에정일

2021-10-29 15:26:20
한지선(031-820-0635)
2021-11-17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16 16:41:3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민원(1AA-2110-12514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칙의 지도·감독 부서, 학칙 지도·감독 사업, 학생인권 침해적 규정의 파악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귀하의 경기도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규정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과 학생이 참여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매년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적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선 연구 후 인권 친화적 규정 개선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2021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2021. 2. 26. 시행) 탑재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학생생활인권과-111번 게시물(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구제를 하는 등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선 연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적 규정을 개선하도록 안내하여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한지선 주무관(031-820-063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인쇄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560
신청일	2021-10-29 15:24:58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014295
접수일	2021-11-01 09:11:48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15:28:5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0-1251560)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촛불청소년연대가 학교규칙(이하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인권의 침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심이 고무적임을 말씀드립니다.

○ 경상남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2018.2.19.)에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시행하며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 권고”를 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별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의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기숙사생활규정, 자치규정, 선도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보급함으로써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별도의 붙임 문서로 답변을 드리며, 구체적인 학교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소속의 학교는 ‘학교 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 사이트에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털사이트 검색: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 전국학교정보 / 학교별 공시정보 (학교급, 시/도, 시/군/구, 학교명 선택하여 세부 공시항목 열람가능)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이정은 (☎055-210-5172, ilovethepresent@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민주시민교육과-21621 (첨부)] 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경남교육청).hwp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 학교규칙 업무와 관련된 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사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2) 학생생활규정 관련 사항: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개선권고, 컨설팅, 담당자 연수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 발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p> <p>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p> <p>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p> <p>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p> <p>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p> <p>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p> <p>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p>	○	<p>* 보 유 하 고 있 지 않 은 정 보 임</p> <p>*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통 해 확인 바 람</p>
2 복 장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겉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p> <p>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p>	○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		
	<p>“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p> <p>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 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p> <p>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p> <p>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 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p>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 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p>“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 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p> <p>“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한 다.”</p>	○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p>“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 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 다.”</p>	○	
	속치마 미착용	3점	

		<table border="1">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d></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d></td> </tr> </table>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소 지 품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4 정 치 활 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p>“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p> <p>“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p> <p>“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p>	○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690
신청일	2021-10-29 15:27:59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p>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0512
접수일	2021-10-29 15:34:26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17:31:31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110-125169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생 인권침해 학칙 실태 및 개선”을 요구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인권침해 학칙 실태 및 개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질문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답변: 학생생활과입니다.

질문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변: 학교규칙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벌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발 -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353교(복장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학교 수임)

2. 복장-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29교

2-1. 복장-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치마와 바지 선택 규정이 있는 학교 210교(선택 규정이 없다고 하여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2.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자료부존재(1번 두발, 복장 제한 규정에 포함됨)

3.소지품-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412교(휴대폰을 제출하는 규정 포함)

4.정치활동-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자료부존재

4-1.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교육청의학칙 파악 여부 O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자료부존재

학교규칙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 7호에서는 ‘학교 규칙에 의해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근거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교육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규칙(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도록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교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우리 교육청은 더욱 분발하고 성철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우재용 장학사(054-805-35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인쇄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771
신청일	2021-10-29 15:29:16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2388
접수일	2021-10-29 16:11:22
담당자(연락처)	고병연(062-380-4593)
처리에정일	2021-11-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5 09:49:40

▣ 민원 요지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해 질의함.

▣ 처리 요지
○ 질의한 서식에 따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응답함.

▣ 답변 내용(안)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2AA-2110-1142388)에 대해 [별첨1]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나 다른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화(062-380-4593, 고병연)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별첨1]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회신.hwp

인쇄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

-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까?

- (매년)광주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인권존중의 학생생활규칙 개정 권고
- (3~4월)인권존중의 학생생활규칙 개정 및 예시안 안내
- (11~12월)학생생활규칙 개정 결과 수합
- (1~2월)학생생활규칙 개정 예시안 마련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p> <p>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p> <p>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p> <p>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p> <p>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p> <p>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p> <p>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p>	용모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보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2020기준)	전면적 보장을 하고 있는 학교 수 7교
2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교복 착용 시기나 덧옷	자율적 선택 보장을 명시하지

장	복 위 겉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 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	착용에 대한 자율적 선택 보장 명시 여부(2020 기준)	많은 학교 수 4
		“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 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 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0	0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	0	0
		“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 한다.”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 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	0	
	“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			

		다.”						
		<table border="1"> <tr> <td>속치마 미착용</td> <td rowspan="3">3점</td> </tr>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r> </table>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소 지 품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0	13				
4 정 치 활 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0	3(후반기 삭제예정)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0	3(후반기 삭제예정)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801
신청일	2021-10-29 15:30:46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생활문화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1753
접수일	2021-10-29 15:58:33

담당자(연락처)
처리에정일

육다솔(053-231-0527)
2021-11-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14:40:1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1251801)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 이송되어 왔기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 파악 여부 및 해당 학교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를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생활문화과에서 학교인권교육 및 학생생활규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된 법률과 학생 인권침해적인 생활규정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지속적으로 권고·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0년에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으로 시행하여 용모(두발, 복장 등), 휴대폰 소지, 정치활동 등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학교별 컨설팅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2020년도에 컨설팅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제개정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하반기에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점검한 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문화과 업무담당자 이정수(전화번호 053-231-0502, 팩스번호 053-757-8240, cybor9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인쇄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889
신청일	2021-10-29 15:32:11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1299
접수일	2021-10-29 15:52:10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5 08:57:13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주신 민원(1AA-2110-1251889)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학교 규칙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규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이며, 인권친화적 학교 규칙 운영을 위해 학교 규칙 T/F팀을 구성하여 각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각 학교에 환류하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학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며 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귀하께서 보내주신 세부적인 학칙 항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육미란 장학사(전화: 042-616-8462, E-mail: yk.miran@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파일

인쇄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942
신청일	2021-10-29 15:33:28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p>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3532
접수일	2021-10-29 16:42:25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4 16:44:01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0-125194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1-1. 우리교육청에서 학생자치 및 학생인권보호교육은 교육혁신과,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 사업은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우리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함께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학교별로 통보하여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개정된 생활규정은 이행여부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비교육적인 규정에 대해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급에 따라 3년 주기로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 2020학년도 고등학교(초, 중 자체 점검), 2018, 2021학년도 중학교(초, 고 자체 점검), 2019, 2022학년도 초등학교(중, 고 자체 점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21학년도에 실시한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는 현재 학교별로 통보하여 제.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실시한 고등학교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이행 결과는 첨부와 같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우리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이 안내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부민영 장학사(☎860-0396, ellysabet@korea.kr)에게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이행 결과.jpg

인쇄

2020년 고등학교 점검 결과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I. 두발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	55교 중 49교 제·개정 이행
II. 복장	교복 착용 시기 및 겹옷 착용 제한	○	55교 중 45교 제·개정 이행
	치마교복을 강제	○	9교 중 9교 제·개정 이행
	치마의 길이를 제한	○	1교 중 1교 제·개정 이행
	속옷 착용 여부	○	2교 중 2교 제·개정 이행
III. 휴대 전화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수거	○	72교 중 57교 제·개정 이행
IV. 정치 활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금지	○	43교 중 41교 제·개정 이행
	학교장 허락없는 외부활동	○	13교 중 13교 제·개정 이행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1991
신청일	2021-10-29 15:34:48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028083
접수일	2021-11-01 10:12:27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7 14:24:2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전흥수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2110-125199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 담당업무 :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 담당부서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학생 생활규정 학교자체점검 및 모니터링

- 학생 생활규정 지원단 컨설팅 지원

-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우수학교 표창

- 학생 생활규정 업무담당자 연수 등

※ 학교규칙은 학교교육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하게 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벌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3. 기준)

2-1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43교

2-2-1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부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2-2-2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유사 항목) 여학생 교복의 치마와 (반)바지 선택권을 보장한 조항이 있다. 또는 여학생 교복의 치마강제 착용 규정이 없다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7교

2-2-3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206교

2-2-4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2021.11. 기준)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28교(2021학년도 내 개정 예정)

2-3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유사 항목)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없다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66교

2-4-1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 유사 항목) 학생 정치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22교
- 2-4-2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 ▶ 교육청 학칙 파악 여부: 여
 - ▶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30교

※ 현재 학교는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중으로 2021학년도 최종 현황은 2학기 말 학생 생활 규정 학교 자체점검 및 최종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 수합 후 확인 가능

귀하의 민원 내용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홍수 장학사(☎02-399-9541, win107@sen.go.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한마디 더	
회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학교가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중 7,8,9호)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초, 중, 고 각급 학교의 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검토하고,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결정례 등을 참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음)

- => 관내 중·고교(중26, 고21교) 생활규정조항을 전수조사(6월)한 결과, 일부 학교에 사과순례제도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생활 규정 개선 권고안을 마련(2021년 6월말)하였고,
- 3주체 토론회, 학생연합회 토론회, 교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7~8월)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권고사항을 안내(8월 말)하였음
 - 2022년 1월 각 학교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인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추진 계획임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 발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 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p>	○	21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	6

2 복 장	복 위 겉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 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		
		“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 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 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토피환자 등 필요시 학교장은 바지 착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치마길이는 무릎뼈 가운데까 지 내려와야 한다.	○	1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 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 “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한다.”	○	11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 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 다.”	○	없음	

		<table border="1"> <tr> <td>속치마 미착용</td> <td rowspan="3">3점</td> </tr>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r> </table>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소 지 품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28				
4 정 치 활 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2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	4				

=> 단, 위 표의 조사 결과는 2021년 1학기 기준임

=> 관내 중·고교(중26, 고21교) 생활규정조항을 전수조사(6월)한 결과, 일부 학교에 사과순례제도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생활 규정 개선 권고안을 마련(2021년 6월말)하였고,

- 3주체 토론회, 학생연합회 토론회, 교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7~8월)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권고사항을 안내(8월 말)하였음
- 2022년 1월 각 학교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인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추진 계획임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2340
신청일	2021-10-29 15:41:58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012153
접수일	2021-11-01 09:06:47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4 13:35:16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교육청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10-125234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은 ‘우리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교 규칙 실태에 대한 질의’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1 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 질의 및 회신 양식’의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답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 교육청은 매년 각급 학교에 학생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개정을 계속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규칙을 모니터링하여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과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하여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 규칙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외부전문가로 학교 규칙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하여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전 학교에 알리어 학생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개정을 계속하여 안내,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규칙 개정 과정에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특히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귀 청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두발, 복장, 소지품, 정치활동 등의 항목은 우리 교육청의 학교 규칙 모니터링 중점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시행한 학교 규칙 모니터링 결과 일부 학교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걸로 파악되어 올해 컨설팅을 통해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몇 해에 걸쳐 학생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각급 학교에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 개정을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발전해가는 울산교육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경익 장학사(052-210-52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2451
신청일	2021-10-29 15:46:45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3956
접수일	2021-10-29 16:54:03
담당자(연락처)	김미경(032-420-8483)
처리에정일	2021-11-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16:40:01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12524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생활규정 중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칙 요소 개정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개정 시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1-1.에 대한 답변]

- 학생의 인권보장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단위학교 학교규칙 중 학교생활규정 담당부서: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질의1-2.에 대한 답변] 학교규칙 중 학교생활규정 관련 구체적 업무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방향 및 운영에 대한 연간 계획 안내
-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인권 관련 권고사항 즉시 안내
- 학교생활규정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 인권 침해요소, 비민주적 학교생활규정 내용 등 수정, 권고 및 컨설팅 실시

[질의2.에 대한 답변]

우리교육청은 2021.11월~12월 말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생활규정모니터링 전수 조사를 실시중입니다. 귀 단체가 요청하신 자료 제공을 위해 공문 발송 할 경우 이중으로 학교생활규정 업무처리 부담을 학교에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되는 학교생활규정 모니터링이 종료된 후에 귀 단체가 요구하신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김미경 장학사(☎420-8483, kmkcho2001@ice.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통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한마디 더	
회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학교가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말 완료 예정인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희망합니다.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권고사항 안내
- 학교단위 자체 점검표, 교육지원청 모니터링용 체크리스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안내
- 단위학교 자체 점검(6월), 교육지원청 단위 모니터링(7월)
-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분석 및 결과 안내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현황 파악 예정(11월~)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p> <p>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p> <p>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p> <p>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p> <p>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p> <p>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p> <p>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p>	○	52교
2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을 통해

장	복 위 겉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 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		현장 컨설팅하였으며, 추후 파악 예정
		“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 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3교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컨설팅하였으며, 추후 파악 예정
		“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한다.”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컨설팅하였으며, 추후 파악 예정	
	“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r> <td>속치마 미착용</td> <td rowspan="3">3점</td> </tr>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r> </table>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소 지 품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68교				
4 정 치 활 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17교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컨설팅하였으며, 추후 파악 예정				

※ 2021년 7월 기준이며, 현재 학교단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모든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된 민원은 조회하기 위해 민원신청번호 또는 본인인증수단(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신청·접수

2 실과 분배

3 담당자 배정

4 완료

신청 정보

민원 신청 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020265

접수일 2021-11-01 09:31:27

담당자(연락처) 김중기 (063-237-0356)

처리에정일 2021-11-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11-02 17:05:59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답변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125267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민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의 생활규정과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요청 서식을 이용하여 답변드립니다.

1-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

1-2. 우리 부서의 학교생활규정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학교생활규정의 학생인권 침해 요소 파악: 2년 단위로 도내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
- ②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권고: 전수 조사 결과,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2020. 11. 24.). 개정한 학교생활규정 원본 제출 요구(~2021. 12. 31.)
- ③ 인권우호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④ 담당 교사, 학생회 임원 학교생활규정 연수
- 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표준안) 보급

2. 2019년 10월에 실시한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전라북도 내 초·중·고 760교)

(※ 첨부 파일의 민원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①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288교, ②교복착용기간을 제한하거나 겹옷 착용을 금지하는 학칙: 106교, ③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130교, ⑥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거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칙: 82교, ⑦ 정당가입 및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77교로 조사되었으며, ④치마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⑤ 속옷의 착용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⑧ 학교장의 허락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교생활규정 담당자 하늘빛(063-237-03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2-02-02 17:05:59

첨부 파일

민원답변서(제1275호).pdf

만족도 평가하기

해당기관의 민원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39조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오류신고·이용문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번(무료),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수어상담 평일 09:00~18:00)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600-8172(유료), 070-4140-1458(유료), 평일 09:00~18:00)

COPYRIGHT(c)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민원 질의 답변

민원인 성명	블라인드 처리	처리일자	2021. 11. 2.	
처리결과 통보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 요지	전라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교규칙 실태 질의			
민원 처리 내용				
<p>안녕하십니까?</p> <p>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0-125267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p> <p>귀하께서 요청한 민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의 생활규정과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요청 서식을 이용하여 답변드립니다.</p> <p>1-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p> <p>1-2. 우리 부서의 학교생활규정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생활규정의 학생인권 침해 요소 파악: 2년 단위로 도내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 ②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권고: 전수 조사 결과,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2020. 11. 24.). 개정한 학교생활규정 원본 제출 요구(~2021. 12. 31.) ③ 인권우호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④ 담당 교사, 학생회 임원 학교생활규정 연수 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표준안) 보급 <p>2. 아래 표는 2019년 10월에 실시한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전라북도내 초·중·고 760교)</p>				
순서	내 용	교육청의 학 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이 있는 학교 수	비고
1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	288	복장과 두발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
2	교복 착용 기간을 제한하거나 걸옷 착용을 금지하는 학칙	○	106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
3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	130	치마, 바지 선택 규정이 없는 학교
4	치마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	×	
5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	×	
6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칙	○	82	

7	정당 가입 및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	77	표현의 자유 침해 규정이 있는 학교(집회 허가제 등)
8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교생활규정 담당자 하늘빛 (063-237-03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번호 및 접수 일자		접수번호 제1275호(2021. 11. 1.)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직 명	교사
성명	하늘빛	연락처	063-237-0354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2723
신청일	2021-10-29 15:50:29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4366
접수일	2021-10-29 17:02:36
담당자(연락처)	김성철(064-710-0494)
처리에정일	2021-11-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5 14:53:25

1. 먼저 제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110-125272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의 학칙 내용 중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 실시 유무 및 실태’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2021.1.8.)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2021.8.31.)되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하여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교사 T/F를 구성하여 초등 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내용 중 회신서에 기재된 내용(단위 학교 학교규칙 실태)의 답변은 첨부문서로 답변드립니다.
5.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학생인권지원관 김성철(☎064-710-0494)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자료(2021.11.05.).hwp 국민신문고 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 회신서(2021.11.05.).hwp

인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민원 정보			
신청경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110-1252723
신청일시	2021.10.29. 15.50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답변 작성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원 제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먼저 제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110-125272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의 학칙 내용 중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 실시 유무 및 실태'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2021.1.8.)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2021.8.31.)되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하여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교사 T/F를 구성하여 초등 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내용 중 회신서에 기재된 내용(단위 학교 학교규칙 실태)의 답변은 첨부문서로 답변드립니다.

5.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학생인권지원관 김성철(☎ 064-710-0494)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 발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 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묶기를 권장한다.”</p>	모니터링 중	초등 0개교 중등 36개교 고등 24개교
2 복 장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 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p>	모니터링 중	중등 5개교 고등 8개교
		<p>“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p>		

	<p>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p> <p>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p> <p>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중	중등 2개교 고등 10개교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	모니터링 중	중등 27개교 고등 18개교	
	“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한다.”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니터링 중	중등 6개교 고등 8개교	
	“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r> <td>속치마 미착용</td> <td rowspan="3">3점</td> </tr>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r> </table>			속치마 미착용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소 지 품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중	초등 104개교 중등 43개교 고등 25개교
4 정 치 활 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모니터링 중	초등 60개교 중등 41개교 고등 30개교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중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2814
신청일	2021-10-29 15:51:46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p>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3502
접수일	2021-10-29 16:41:52

담당자(연락처)
처리에정일

김영재(041-640-7421)
2021-11-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08:51:21
답변서

□ 제목 :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신청번호: (1AA-2110-1252814) - 2021.10.29.

제안인: 비공개

답변인: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영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1.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영재입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1AA-2110-1252814) (2021.10.29.) 내용은 '학생인권침해 학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영재 장학사(041-640-74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충남교육청).hwp

인쇄

[별첨 1] 학생 인권 침해 학칙 조사 관련 질의 및 결과 회신 양식

1. 귀 청은 아래 기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6조 및 제 8조, 제 18조의 4, 제 63조에 따라 관할 단위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 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1. 귀 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충남학생인권센터

- 1-2. 위 담당 부서에서 각 단위 학교의 학교 규칙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충청남도 초·중·고 학교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제·개정 지원,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등

2. 귀 청이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생활규정, 별점규정 포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몇 개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예시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1 두 발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p>“제19조 (두발) ①두발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염색과 파마머리,비대칭,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④남학생의 두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앞머리길이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2.옆머리는 귀를 완전히 덮지 않게 한다. 3.뒷머리는 교복 깃을 덮지 않게 한다. ⑤여학생의 두발은 단정한 학생 머리로 하되,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뭉기를 권장한다.”</p>	점검 중	점검 중
2 복 장	교복 중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을 정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학칙	<p>“제15조 (교복 착용 시기) ①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착용 : 10월 1일~5월 30일 2. 춘추복 착용 : 5월 1일~6월 31일, 9월 1일~11월 31일 3. 하복 착용 : 5월 1일~10월 30일”</p> <p>“제16조(교복 착용 규정) 학생의 교복 규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동절기에는 교복이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만 착용한다. 나) 그 해 기후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며, 그</p>		

		<p>시기를 정하여 공고한다.</p> <p>다) 동절기에는 교복 상의가 아닌 외투 착용을 등, 하교 시, 중식 시간에만 허용하며, 수업 시간과 교내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상의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p>						
	치마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교복 치마를 입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p>“제2조(복장) 6. (동·하복 하의) 규격에 따른 주름치마 또는 바지를 입으며, 치마의 모양과 길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입는 것을 금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려야 한다.”</p> <p>“3.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 라. 교복 스커트의 길이는 55cm을 유지한다.”</p>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p>“제17조 (하복) ①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제2조(복장) 5. (하복상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내의를 입고 넥타이를 꼭 착용한다. 단, 규격에 따른 티셔츠(생활복) 착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r> <td>속치마 미착용</td> <td rowspan="3">3점</td> </tr> <tr> <td>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td> </tr> <tr> <td>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td> </tr> </table>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속치마 미착용	3점							
규정 외 양말/스타킹(성인용 검정스타킹 등)								
춘추복에 검은스타킹 착용								
3	교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도록 하는 학칙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						

품		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정 치 활 동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학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써클/단체에는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		

- 충청남도교육청은 2020.9.10.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제·개정 추진 현황

순	일 시	추진 내용	비고
1	2020.7.10.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2	2020.12.1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안내	
3	2021.3.~2021.7.	2021 학교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4	2021.7.16.	학교생활규정 자체 점검 및 점검 결과 제출	
5	2021.10.15.	학교생활규정 점검 계획 수립(컨설팅단 구성)	
6	2021.10.29.	학교생활규정 점검 협의회(1차)	점검단 20명
7	2021.11.1.~11.7.	학교생활규정 점검(초·중·고 전체 학교)	
8	2021.12.2.	학교생활규정 점검 협의회(2차)	
9	2021.12.중	학교생활규정 점검 결과 학교 안내 및 컨설팅	5교 내외 방문
10	2022.1.중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및 지원	
11	2022.3.~2022.7.	2022 학교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 현재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안내된 표준 학교생활규정을 기초로 제·개정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으로 제·개정되었으나 혹시라도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학칙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이 과정에서 학생 인권 침해 학칙은 모두 해당 학교에 안내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으로 제·개정할 것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을 규제·통제하기 위한 생활규정이 아닌,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규정이 되도록 점검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권 친화적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0-1252844
신청일	2021-10-29 15:52:48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내용

제목 내용	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 1. 귀 교육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청소년, 학부모, 법률가 등 시민사회 371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3. 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동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의 반복된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귀 청의 관할 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첨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6. 상세한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참고 자료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민원_각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학칙 실태에 대한 질의.pdf 붙임1_학생인권침해학칙조사결과_질의_및_회신양식.hwp 붙임2_학생인권침해학칙관련_국가인권위원회_결정례등.hwp 붙임3_촛불법제정연대소개.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자치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1142083
접수일	2021-10-29 16:03:53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1-11-08 13:37:1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110-125284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학생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요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학교 생활교육 및 운영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1.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위해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 안내 및 TF팀 구성·운영하는 부서는 충청교육청 학교자치과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지원을 위해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TF팀을 운영하여 예시안, 제정·개정 절차, 해설서 등을 안내하였고,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정·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시·군 교육지원청별 TF팀 구성·운영,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제정·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선포(2016.5.31.) 이후 학교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실천규약을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자발성을 기본으로 서로 협의하여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협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포함) 제정·개정 등 학교 운영을 통할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안내 및 제정·개정 협조를 통해 학생생활규정 중 인권 침해요소 개선·삭제(두발, 용의복장,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 징계기중 등), 학생의 정치참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 삭제 등 학교급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별 TF팀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및 제·개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요청하신 교육청의 학칙 파악 여부 및 해당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에 대한 정보는 실제로 생산·접수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혹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제·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제정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의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장학사 전우석(☎043-290-2772, math815@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원 제도 개선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 확인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첨부 파일